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553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5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출산휴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현행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 3의 비고 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수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본문 중 “제14항에”를 “제15항에”로, “제14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
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
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
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
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⑰ (생 략)

-----.

-----.

⑰ (현행과 같음)